대한자동차경주협회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

KARA 항소 신청서

1. 항소 정보

대회명		Round		개최일	
클래스		피항소대상	(선수/팀등)		

2. 항소신청자 정보

팀 명		항소신청자(엔트리)	(선수/팀대표/감독)
연락처(H.P)		e-mail 주소	

3. 항소 접수 절차

항목	날짜	시간
항소 의사 표시	(항소자 기재)	(항소자 기재)
심사위원회 항소 의견 청취	(항소자 기재)	(항소자 기재)
항소 서류 접수	(대회사무국 기재)	(대회사무국 기재)
항소 1차 보증금 접수 (금액 : 500,000원)	(대회사무국 기재)	(대회사무국 기재)
항소 잔여 보증금 접수 (금액 : 4,500,000원)	(KARA 기재)	(KARA 기재)
항소 접수 최종 완료	(KARA 기재)	(KARA 기재)

4. 항소내용 (6하 원칙에 근거 **발생 시간, 장소, 항소 대상, 항소 내용, 관련 규정, 등을** 작성하여 주세요.)

뒷면에 계속

5. 항소처분 요구사항

상기와 같이 KARA에 항소하며 그에 따른 처분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항소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제출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귀중

사무국장	심사위원장
서명 확인시간	서명 확인시간

※ KARA 항소 절차 안내 **(국내스포츠규정 제13조 항소)**

1. 모든 경기 참가자는 그 국적에 관계없이 심사위원회가 선고한 벌칙 또는 결정에 대하여, KARA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식결과 발표 후 1시간 이내에서면으로 대회 사무국 또는 심사위원회에 항소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을 통보해야 하고 항소 보증금 일부(50만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항소의사는 이 시점부터 96시간 동안 유효하다. 항소 의사 통보 후 항소를 취하하였을 경우 미리 지불한 항소 보증금 일부(50만원)는 몰수된다.
2. **잔여 항소보증금(450만원)은 심사위원회가 항소할 뜻을 통보 받은 지 96시간 안에 지불되어야 한다.** 의사를 전달하고 항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항소 보증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항소보증금은 매년 KARA가 별도로 정한다.
3. 항소가 기각되거나 제기된 뒤 철회되ㅎ다면, 항의 보증금은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4. 일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항소가 인정되면 전체를 반환한다.
5. KARA는 최대 30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항소 보증금 납부 정보(농협은행 : 0890-1293-978, 예금주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